

의안번호	2212975
의 퇴 인	한민수의원
회 답 일	2025. 12. 29.
추계번호	25B509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상생협력 등)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발전과 상생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92조의4¹⁾를 준용함.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971호)을 준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발전과 상생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시책 및 상생협력사업 등을 실시함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3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계약 등)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6조의6, 제76조의7²⁾을 준용함.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971호)을 준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 및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 조성,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이를 보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971호) 제92조의4(상생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조화로운 발전과 상생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상생 협력과 건전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 등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규정에 따른 시책 및 상생협약, 상생협력사업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마련,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송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의2(상생협력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8조의3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계약 등) 신설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에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포함) 간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방송채널 사용 계약 관련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 등에게 보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 참조

-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971호) 제76조의6(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 등) ① 방송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협의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고, 그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6조의7(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 및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 조성,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위하여 방송사업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방송사업자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는 그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서비스의 제공,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에 관한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세 사유

□ 상생협력사업 실시 등(안 제12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³⁾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 상생 협력과 건전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 등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사업 등의 세부내용 및 사업규모, 자금 및 기술 개발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관련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상생환경 조성,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사업 및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5년	2026년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물의 인정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지원	270	270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방송법 등에 따른 금지행위 등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 구축	565	62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 시책, 상생협력사업 시행 등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

본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가 공정한 계약 내용과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에 표준이 될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계약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강행 규정에 반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이하 “유료방송사”라 한다)와 (주)○○○(이하 “PP”라 한다)는 PP의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이란 PP가 유료방송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유료방송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PP가 유료방송사에게 제공하는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 내용물을 말한다.
3. “**프로그램사용료**”란 유료방송사가 PP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채널번호**”란 유료방송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채널에 시청자가 채널을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유료방송사와 PP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유료방송사와 PP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채널 편성 등) ① 유료방송사와 PP의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채널은 다음과 같다.

상호명* (방송구역)	유료방송 상품명	채널명	채널번호	채널등록증상 공급분야

* 해당 방송구역에서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유료방송사의 상호명

② 유료방송사는 채널 편성 정책 등에 따라 채널번호를 변경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PP가 유료방송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분야를 변경한 경우, 유료방송사는 PP에게 채널번호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PP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프로그램의 변경 등) ① 유료방송사는 PP가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막 등을 방송프로그램의 상단 또는 하단에 삽입할 수 있다.

1. 유료방송사의 운영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2. 천재지변, 재난 등의 비상사태를 시청자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료방송사와 PP가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와 PP 간 방송광고 배분 관련 사항은 유료방송사와 PP가 서면으로 별도로 정한다.

③ PP가 유료방송사를 통해 방송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과 이에 부수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PP가 소유한다.

④ 유료방송사는 이 계약에 따른 방송과 홍보 목적 이외에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PP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송,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유료방송사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이 계약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P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프로그램사용료) ① 이 계약에 따라서 유료방송사가 PP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사용료는 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또는 프로그램사용료를 정률로 지급할 경우>

① 이 계약에 따라서 유료방송사가 PP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사용료는 유료방송사의 000 매출의 0%(부가세 별도)이다. 이 경우 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사용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료방송사는 PP에게 매월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받으려는 PP는 매월 00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사용료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유료방송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을 청구받은 유료방송사는 청구를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프로그램사용료를 현금으로 PP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의 지연이자를 PP에게 지급한다.

제7조(신호 전송 및 수신) ① 유료방송사는 PP가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최상의 화면과 음질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설비 및 수신자 구내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② PP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동안 송수신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상의 화면과 음질로 유료방송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제9조(계약의 갱신) ① 유료방송사와 PP는 제8조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상호 합의에 따라 0개월간 협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유료방송사와 PP간에 계약 갱신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널번호, 프로그램사용료 등 방송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만료 후 0개월간 이 계약을 준용하며, 이 기간 동안 유료방송사는 PP가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할 수 없고 PP는 유료방송사에게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갱신된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사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0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유료방송사와 PP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파산, 화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정부, 법원 등으로부터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PP가 유료방송사에게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7일 이상(유료방송사와 PP가 합의하여 7일 이상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이에 따름)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유료방송사가 방송을 7일 이상(유료방송사와 PP가 합의하여 7일 이상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이에 따름)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5. 유료방송사가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프로그램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프로그램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당사자 일방이 제14조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제11조(계약의 양도) 유료방송사와 PP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유료방송사와 PP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여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통지방법) ① 유료방송사와 PP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유료방송사와 PP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면책한다. 이 경우에 유료방송사와 PP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유료방송사와 PP는 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경영상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의 및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료방송사와 PP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유료방송사와 PP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조정,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0000을 1심 관할 법원의

로 한다.

-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② 유료방송사와 PP가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 이외에 구두로 합의하거나 약속한 사항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유료방송사와 PP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와 PP가 이 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합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별첨 문서로 명시합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유료방송사와 PP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유료방송사 주소
법인명
대표자 (인)

PP 주소
법인명
대표자 (인)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안)

본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와 「방송법」 제 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정한 계약 내용과 조건에 따라 방송채널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방송사업자 사이의 방송채널 사용계약에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채널 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방송사업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계약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강행 규정에 반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이하 “유료방송사”라 한다)와 (주)○○○(이하 “홈쇼핑사”라 한다)는 유료방송사가 운용하는 채널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의 방송채널 사용계약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채널사용계약**”이란 유료방송사가 운용하는 특정채널에 대해 홈쇼핑사가 전용(專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게 제공하는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 내용물을 말한다.
3. “**송출수수료**”란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게 지급하는 채널 이용의 대가를 말한다.

4. “채널번호”란 유료방송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채널에 시청자가 채널을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그에 따라 제정된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채널번호 등) 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방송채널 사용계약에 따른 채널번호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명* (방송구역)	
유료방송 상품명	○○○ (아날로그)
채널번호**(채널명)	○○번(○○○)
	○○번(홈쇼핑사 채널명 기재)
	○○번(○○○)
상호명* (방송구역)	
유료방송 상품명	○○○ (디지털)
채널번호**(채널명)	○○번(○○○)
	○○번(홈쇼핑사 채널명 기재)
	○○번(○○○)

* 해당 방송구역에서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유료방송사의 상호명

** 채널번호의 기재순서는 홈쇼핑사의 직전 채널번호, 홈쇼핑사 채널번호, 홈쇼핑사의 직후 채널번호로 한다.

②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한 홈쇼핑사 채널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1.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채널번호 변경을 사전에 합의한 경우
2. 관련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감독기관의 법령에 따른 명령 등에 따라 채널번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방송장비나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채널번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재난,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널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홈쇼핑사 채널번호를 변경할 경우 변경할 채널번호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는 상대방에게 송출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송출수수료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홈쇼핑사의 채널번호의 직전 채널 또는 직후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 채널이 변경된 경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상대방에게 송출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프로그램의 변경 등) ① 유료방송사는 홈쇼핑사가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막 등을 방송프로그램의 상단 또는 하단에 삽입할 수 있다.

1. 유료방송사의 운영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재난 등의 비상사태를 시청자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합의한 경우

②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를 통해 방송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과 이에 부수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홈쇼핑사가 소유한다.

③ 유료방송사는 이 계약에 따른 방송과 홍보 목적 이외에 제2항의 방송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홈쇼핑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송,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유료방송사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이 계약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쇼핑사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송출수수료) ① 이 계약에 따라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000원(부가세 별도)이다.

② 홈쇼핑사는 유료방송사에게 매월 송출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출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유료방송사는 매월 00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송출수수료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홈쇼핑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송출수수료 지급을 청구받은 홈쇼핑사는 청구를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송출수수료를 현금으로 유료방송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자율의 지연이자를 유료방송사에게 지급한다.

제7조(신호 전송 및 수신) ① 유료방송사는 홈쇼핑사가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최상의 화면과 음질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설비 및 수신

자 구내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② 홈쇼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동안 송수신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상의 화면과 음질로 유료방송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서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계약의 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제9조(계약의 갱신) 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제8조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상호 합의에 따라 0개월간 협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협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단, 가이드라인의 수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따른다.

③ 제8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에 계약 갱신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널번호, 송출수수료 등 방송채널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기간 만료 후 0개월간 이 계약을 준용하며, 이 기간 동안 유료방송사는 홈쇼핑사가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할 수 없고 홈쇼핑사는 유료방송사에게 방송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갱신된 계약에 따라 송출수수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0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④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계약 갱신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송출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호 합의된 방법에 의해서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파산, 화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정부, 법원 등으로부터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7일 이상(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합의하여 7일 이상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이에 따름)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유료방송사가 방송을 7일 이상(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합의하여 7일 이상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이에 따름)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5.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게 송출수수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송출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송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당사자 일방이 제14조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제11조(계약의 양도)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방송채널 사용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통지방법) 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면책한다. 이 경우에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경영상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의 및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합의

하여 정한다.

②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조정,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0000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②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 이외에 구두로 합의하거나 약속한 사항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이 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합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별첨 문서로 명시합니다.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월 0일

유료방송사 주소
법인명
대표자 (인)

홈쇼핑사 주소
법인명
대표자 (인)